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, ,		1 (== 1-	, ,		<u>' / </u>
담당 부서	IT검	사국			연락처	02-3145-7429
□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PC(인터넷망과 물리적						
분리)에서 내부 개발/테스트 회선에 연결된 가상PC(타 회선과 물리적						
분리)에 접속하여, 현업사용자에 의한 프로그램 테스트를 실시하는						
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						하는지 여부
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	
「전	자금융감	·독규정」	제15조제1형	항제5호는 전·	산실 내여	게 위치한 정보처리
시	스템과 히	내당 정보:	처리시스템의	의 운영, 개빌	t, 보안 4	목적으로 직접 접속
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						
것	을 규정하	고 있습니	다.			
□ 문9	의하신 시	 실관계	하에서 귀시	사는 내부통 <i>식</i>	신망과 연	년결된 내부 업무용
PC	C(A)를 인	터넷 등	외부통신망	으로부터 물	·리적으로	르 분리하고 있고,
ㅇ 전/	산실 내 정	정보처리시	스템과 해딩	· 정보처리시:	스템의 개	발(테스트) 목적으로
직접 접속하는 가상PC(B)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면						적으로 분리한다면,
ㅇ 내	부 업무용	- PC(A)에	서 가상PC(B)에 접속하는	: 것은 ㅇ]미 인터넷 등 외부
통신망과의 물리적 망분리가 적용된 내부망 간의 연결로써 상기 규정에						
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.						
	- 부	담당 부서 □ 금융회사가 분리)에서 나 분리)에 접을 경우 전자금 아래 내용을 □ 시스템과 히 하는 단말기 것을 규정하 □ 문의하신 시 PC(A)를 인 ○ 전산실 내 경 직접 접속히 ○ 내부 업무용 통신망과의	담당 부서 □ 금융회사가 내부통. 분리)에서 내부 개별 분리)에 접속하여, 현경우 전자금융감독급 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다. □ 전자금융감독규정」 시스템과 해당 정보는 한말기에 대해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PC(A)를 인터넷 등 ○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작점 접속하는 가상되었다. ○ 내부 업무용 PC(A)에 통신망과의 물리적 대	담당 부서 대점사국 대점사국 대점사국 대점사국 대점사국 대점사ス 대점사ス 대적위, 성명) 급용회사가 내부통신망과 연절보리)에 접속하여, 현업사용자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	담당 #서 TT검사국 TT검사국 TT검사역 (직위, 성명) 선임검사역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입문리)에서 내부 개발/테스트 회선에 연결 분리)에 접속하여, 현업사용자에 의한 프로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이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명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는 내부통식 PC(A)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 ○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 직접 접속하는 가상PC(B)도 외부통신망으로부 등신망과의 물리적 망분리가 적용된 내부망	변서

- ***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** 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